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4.12.31.] [법률 제12958호, 2014.12.31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
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
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4년 12월 31일

국무총리 정홍원

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

◎법률 제12958호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"2014년"을 "2017년"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
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
하여도 적용한다.